

< 일 러 두 기 >

- 법령명 : 식품 안전 모니터링 계획의 의무 제정 및 의무 검사 처리 대상인 식품업자, 최소 검사 주기 및 기타 관련 사항
- 제정일 : 2014년 8월 21일
- 최종개정일 : 2022년 1월 5일
- 출처 : 대만 식품약물관리서 (방문일 : 2022년 3월 5일)

식품 안전 모니터링 계획의 의무 제정 및 의무 검사 처리 대상인 식품업자, 최소 검사 주기 및 기타 관련 사항

1. 식품 안전 모니터링 계획 제정이 의무인 식품업자 유형은 다음과 같다:
 - (1) 식용유지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 및 수입업자
 - (2) 공고에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칙」에 부합해야 하는 육류 가공 식품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
 - (3) 공고에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칙」에 부합해야 하는 유제품 가공 식품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
 - (4) 공고에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칙」에 부합해야 하는 수산 가공 식품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
 - (5) 식품 첨가물의 제조, 가공, 조제 및 수입업자
 - (6) 특수 영양 식품 검사 등록 허가를 취득한 업자
 - (7) 콩 수입업자
 - (8) 옥수수 수입업자
 - (9) 맥류 및 귀리 수입업자
 - (10) 찻잎 수입업자
 - (11) 식염 수입업자
 - (12) 밀가루 제조, 가공, 조제 및 수입업자
 - (13) 전분 제조, 가공, 조제 및 수입업자
 - (14) 설탕 제조, 가공, 조제 및 수입업자
 - (15) 간장 제조, 가공, 조제 및 수입업자
 - (16) 염화나트륨 함량이 95% 이상인 식염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
 - (17) 찻잎 음료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
 - (18) 백화점을 제외한 종합 상품 유통업자

- (19) 농산식품, 버섯류 및 조류의 냉동, 냉장, 탈수, 절임, 젤 및 속재료 제품, 식물 단백질 및 그 제품, 대두 가공 제품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 및 수입업자
- (20) 면, 당면류 식품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
- (21) 식초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
- (22) 알 제품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
- (23) 밀가루, 전분 이외의 농산식품, 버섯류 및 조류 제분 제품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
- (24) 조미료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
- (25) 곱고 찌는 식품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
- (26) 영양 보충 식품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
- (27) 비(非)알코올 음료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
- (28) 초콜릿 및 사탕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
- (29) 식용 얼음 제품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
- (30) 식사 및 요리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
- (31) 도시락 식품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
- (32) 기타 식품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
- (33) 육류 가공 식품의 수입업자
- (34) 유제품 가공 식품의 수입업자
- (35) 수산 가공 식품의 수입업자
- (36) 영유아 식품의 수입업자(영아 및 성장기 영아의 조제식품 제외)
- (37) 꿀벌 제품 식품의 수입업자

전 항 제1관~제6관, 제12관~제17관, 제19관~제32관에서 정한 제조, 가공, 조제업자에 재포장 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2. 검사 처리가 의무인 식품업자 유형은 다음과 같다:

- (1) 식용유지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 및 수입업자
- (2) 공고를 통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칙」에 부합해야 하는 육류 가공 식품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
- (3) 공고를 통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칙」에 부합해야 하는 유제품 가공 식품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

- (4) 공고를 통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칙」에 부합해야 하는 수산 가공 식품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
- (5) 식품 첨가물의 제조, 가공, 조제 및 수입업자
- (6) 특수 영양 식품 검사 등록 허가를 취득한 업자
- (7) 콩 수입업자
- (8) 옥수수 수입업자
- (9) 맥류 및 귀리 수입업자
- (10) 찻잎 수입업자
- (11) 식염 수입업자
- (12) 밀가루 제조, 가공, 조제 및 수입업자
- (13) 전분 제조, 가공, 조제 및 수입업자
- (14) 설탕 제조, 가공, 조제 및 수입업자
- (15) 간장 제조, 가공, 조제 및 수입업자
- (16) 염화나트륨 함량이 95% 이상인 식염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
- (17) 찻잎 음료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
- (18) 백화점을 제외한 종합 상품 유통업자
- (19) 농산식품, 버섯류 및 조류의 냉동, 냉장, 탈수, 절임, 젤 및 속재료 제품, 식물 단백질 및 그 제품, 대두 가공 제품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 및 수입업자
- (20) 면, 당면류 식품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
- (21) 식초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
- (22) 알 제품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
- (23) 밀가루, 전분 이외의 농산식품, 버섯류 및 조류 제분 제품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
- (24) 조미료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
- (25) 곱고 찌는 식품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
- (26) 영양 보충 식품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
- (27) 비(非)알코올 음료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
- (28) 초콜릿 및 사탕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
- (29) 식용 얼음 제품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

- (30) 식사 및 요리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
- (31) 도시락 식품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
- (32) 기타 식품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
- (33) 육류 가공 식품의 수입업자
- (34) 유제품 가공 식품의 수입업자
- (35) 수산 가공 식품의 수입업자
- (36) 영유아 식품의 수입업자(영아 및 성장기 영아의 조제식품 제외)
- (37) 꿀벌 제품 식품의 수입업자

전 항 제1관~제6관, 제12관~제17관, 제19관~제32관에서 정한 제조, 가공, 조제업자에 재포장 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3. 1.의 식품 안전 모니터링 계획 제정이 의무인 식품업자의 규모와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1) 제1관~제5관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 공장 등기를 하고 자본액이 3천만 대만달러 이상인 경우, 201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2) 제1관의 수입업자: 사업자등록, 회사 등기 혹은 공장 등기를 한 후 6개월 이내 혹은 개별 로트 수입량이 5톤 이상인 경우,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제5관의 수입업자: 사업자등록, 회사 등기 혹은 공장 등기를 한 경우, 2017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식품 안전 위생 관리법 제30조 제3항에 의거하여 식품 수입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4) 제6관: 사업자등록, 회사 등기 혹은 공장 등기를 한 경우, 2017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5) 제7관: 사업자등록, 회사 등기 혹은 공장 등기를 한 후 3개월 이내 혹은 개별 로트 수입량이 40톤 이상인 경우,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제8관: 사업자등록, 회사 등기 혹은 공장 등기를 한 후 3개월 이내 혹은 개별 로트 수입량이 50톤 이상인 경우,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7) 제9관: 사업자등록, 회사 등기 혹은 공장 등기를 한 후 3개월 이내 혹은 개별 로트 수입량이 460톤 이상인 경우,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8) 제10관: 사업자등록, 회사 등기 혹은 공장 등기를 한 후 3개월 이내 혹은 개별 로트 수입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9) 제11관: 사업자등록, 회사 등기 혹은 공장 등기를 한 후 3개월 이내 혹은 개별 로트 수입량이 15톤 이상인 경우,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0) 제12관~제17관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 공장 등기를 하고 자본액이 3천만 대만달러 이상인 경우 201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11) 제12관의 수입업자: 사업자등록, 회사 등기 혹은 공장 등기를 한 후 3개월 이내 혹은 개별 로트 수입량이 20톤 이상인 경우,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2) 제13관의 수입업자: 사업자등록, 회사 등기 혹은 공장 등기를 한 후 3개월 이내 혹은 개별 로트 수입량이 60톤 이상인 경우,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3) 제14관의 수입업자: 사업자등록, 회사 등기 혹은 공장 등기를 한 후 3개월 이내 혹은 개별 로트 수입량이 150톤 이상인 경우,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4) 제15관의 수입업자: 사업자등록, 회사 등기 혹은 공장 등기를 한 후 3개월 이내 혹은 개별 로트 수입량이 700킬로그램 이상인 경우,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5) 제18관의 종합 상품 유통업자: 종합 상품 유통업의 독립된 소매점이 3곳 이상인 프랜차이즈 브랜드이고 자본액이 3천만 대만달러 이상인 경우, 2017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16) 제19관~제23관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 공장 등기를 하고 자본액이 3천만 대만달러 이상인 경우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7) 제19관의 수입업자: 사업자등록, 회사 등기 혹은 공장 등기를 한 후 3개월 이내 혹은 개별 로트 수입량이 15톤 이상인 경우,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8) 제24관~제27관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 공장 등기를 하고 자본액이 3천만 대만달러 이상인 경우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9) 제28관~제32관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 공장 등기를 하고 자본액이 3천만 대만달러 이상인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 제33관: 사업자등록, 회사 등기 혹은 공장 등기를 한 후 3개월 이내 혹은 개별 로트 수입량이 25톤 이상인 경우,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1) 제34관: 사업자등록, 회사 등기 혹은 공장 등기를 한 후 3개월 이내 혹은 개별 로트 수입량이 15톤 이상인 경우,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2) 제35관: 사업자등록, 회사 등기 혹은 공장 등기를 한 후 3개월 이내 혹은 개별 로트 수입량이 15톤 이상인 경우,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3) 제36관: 사업자등록, 회사 등기 혹은 공장 등기를 한 후 3개월 이내 혹은 개별 로트 수입량이 1톤 이상인 경우,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4) 제37관: 사업자등록, 회사 등기 혹은 공장 등기를 한 후 3개월 이내 혹은 개별 로트 수입량이 1톤 이상인 경우,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5) 식품 안전 모니터링 계획 제정이 의무인 식품 수입업자의 의무 기한은 제정한 연도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이다.

4. 2.의 검사 처리가 의무인 식품업자의 규모 및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1) 제1관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 공장 등기를 하고 자본액이 3천만 대만달러 이상인 경우 2014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2) 제2관~제4관: 공장 등기를 한 경우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3) 제5관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 사업자등록, 회사 등기 혹은 공장 등기를 한 경우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4) 제5관의 수입업자: 사업자등록, 회사 등기 혹은 공장 등기를 한 경우,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식품 안전 위생 관리법 제30조 제3항에 의거하여 식품 수입 검사 신청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5) 제6관: 사업자등록, 회사 등기 혹은 공장 등기를 한 경우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6) 제7관~제11관: 사업자등록, 회사 등기 혹은 공장 등기를 한 경우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7) 제12관~제15관의 수입업자: 사업자등록, 회사 등기 혹은 공장 등기를 한 경우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8) 제12관~제17관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 공장 등기를 하고 자본액이 3천만 대만달러 이상인 경우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9) 제1관의 수입업자: 사업자등록, 회사 등기 혹은 공장 등기를 한 경우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0) 제18관의 종합 상품 유통업자: 종합 상품 유통업의 독립된 소매점이 3곳 이상인 프랜차이즈 브랜드이고 자본액이 3천만 대만달러 이상인 경우, 201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11) 제19관~제27관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 공장 등기를 하고 자본액이 3천만 대만달러 이상인 경우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2) 제28관~제32관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 공장 등기를 하고 자본액이 3천만 대만달러 이상인 경우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3) 제19관, 제33관~제37관의 수입업자: 사업자등록, 회사 등기 혹은 공장 등기를 한 경우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4) 제1관~제5관, 제12관~제17관, 제19관~제32관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 제조 제품이 상업 샘플, 전시품, 연구개발 테스트 용품에 한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 (15) 제1관, 제7관~제15관, 제19관, 제33관~제37관의 수입업자: 수입 제품이 자체 사용, 상업 샘플, 전시품, 연구개발 테스트 용품에 한하는 경우 혹은 식품 용도가 아닌 경우 예외로 한다.
 - (16) 제6관 제품이 상업 샘플, 전시품, 연구개발 테스트 용품에 한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5. 식용유지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는 하기 사항에 대해 동물성 유지 제품 및 식물성 유지 제품의 원료, 반제품 혹은 완제품 검사를 적어도 6개월마다 혹은 개별 로트마다 진행해야 한다:
- (1) 동물성 유지 제품은 해당 원료의 동물용 의약품, 농약 잔류물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협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검사해야 한다.
 - (2) 동물성 유지 제품은 해당 원유의 중금속, 총 극성 화합물, 벤조피렌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협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검사해야 한다.
 - (3) 동물성 유지 제품은 해당 정제유의 중금속, 총 극성 화합물, 벤조피렌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협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검사해야 한다.
 - (4) 식물성 유지 제품은 해당 원료의 농약 잔류물, 진균 독소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협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검사해야 한다.

- (5) 식물성 유지 제품은 해당 정제용 원유의 중금속, 진균 독소, 총 극성 화합물, 벤조피렌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험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검사해야 한다.
- (6) 식물성 유지 제품은 해당 식용 버진 원유의 중금속, 진균 독소, 총 극성 화합물, 벤조피렌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험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검사해야 한다.
- (7) 식물성 유지 제품은 해당 정제유의 중금속, 고시폴(면실유를 사용하는 경우), 총 극성 화합물, 벤조피렌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험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검사해야 한다.

식용 유지의 수입업자는 다음 사항의 경우 동물성 유지 제품 및 식물성 유지 제품 검사를 적어도 6개월마다 혹은 개별 로트마다 진행해야 한다:

- (1) 동물성 유지 제품은 중금속, 총 극성 화합물, 벤조피렌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험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검사해야 한다.
- (2) 식물성 유지 제품은 중금속, 진균 독소, 총 극성 화합물, 벤조피렌, 고시폴(면실유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험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검사해야 한다.

6. 육류 가공, 유제품 가공 및 수산 가공 식품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는 해당 제품의 양식 어패류 원료, 가축 가금류 및 기타 식용 부위 원료, 생유(乳) 원료에 대해 동물용 의약품 잔류물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험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적어도 분기별 또는 로트별로 검사해야 한다.

육류 가공식품, 유제품 가공식품 및 수산 가공식품의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동물용 의약품 잔류물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험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적어도 분기별 또는 로트별로 검사해야 한다.

7. 식품 첨가물의 제조, 가공, 조제 및 수입업자는 하기 사항에 대해 단일 식품 첨가물 제품 및 복합 식품 첨가물 제품을 적어도 분기별 또는 로트별로 검사해야 한다:

- (1) 단일 식품 첨가물 완제품의 중금속, 중금속 이외의 불순물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험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검사해야 한다.

- (2) 에센스를 제외한 복합 식품 첨가물 제품의 식품 첨가물 원료, 반제품 또는 완제품의 중금속, 중금속 이외의 불순물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험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검사해야 한다.
- (3) 에센스에 속하는 복합 식품 첨가물 제품의 원료, 반제품 또는 완제품의 중금속, 중금속 이외의 불순물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험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검사해야 한다.
8. 특수 영양 식품 검사 등록 허가를 취득한 업자는 특수 영양 식품 제품의 완제품 미생물, 영양소 함량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험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적어도 분기별 또는 로트별로 검사해야 한다.
9. 콩, 옥수수 수입업자는 콩, 옥수수 제품의 진균 독소, 농약 잔류물, 중금속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험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적어도 분기별 또는 로트별로 검사해야 한다.
10. 맥류 및 귀리 수입업자는 맥류 및 귀리 제품의 진균 독소, 농약 잔류물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험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적어도 분기별 또는 로트별로 검사해야 한다.
11. 찻잎 수입업자는 찻잎 제품 농약 잔류물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험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적어도 분기별 또는 로트별로 검사해야 한다.
12. 밀가루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는 밀가루 완제품의 진균 독소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험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적어도 분기별 또는 로트별로 검사해야 한다.
- 밀가루 수입업자는 밀가루 제품의 진균 독소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험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적어도 분기별 또는 로트별로 검사해야 한다.
13. 전분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는 하기 사항에 대해 전분 제품 원료 또는 완제품을 적어도 분기별 또는 로트별로 검사해야 한다:
- (1) 전분 제품 농산식물 원료의 진균 독소, 농약 잔류물, 중금속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험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검사해야 한다.
- (2) 전분 완제품의 말레산(무수물)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험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검사해야 한다.
- 전분 수입업자는 전분 제품의 말레산(무수물)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험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적어도 분기별 또는 로트별로 검사해야 한다.

14. 식염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는 식염 완제품의 중금속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험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적어도 분기별 또는 로트별로 검사해야 한다.

식염 수입업자는 식염 제품의 중금속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험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적어도 분기별 또는 로트별로 검사해야 한다.

15. 설탕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는 하기 사항에 대해 설탕 제품 원료, 반제품 또는 완제품을 적어도 분기별 또는 로트별로 검사해야 한다:

(1) 설탕 제품 농산식물 원료의 농약 잔류물, 중금속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험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검사해야 한다.

(2) 설탕 제품 반제품 또는 완제품의 이산화황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험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검사해야 한다.

설탕 수입업자는 설탕 제품의 이산화황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험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적어도 분기별 또는 로트별로 검사해야 한다.

16. 간장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는 하기 사항에 대해 간장 제품 원료, 반제품 또는 완제품을 적어도 분기별 또는 로트별로 검사해야 한다:

(1) 간장 제품 농산식물, 버섯류 및 조류 원료의 진균 독소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험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검사해야 한다.

(2) 간장 제품 반제품 또는 완제품의 3-MCPD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험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검사해야 한다.

간장 수입업자는 간장 제품의 3-MCPD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험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적어도 분기별 또는 로트별로 검사해야 한다.

17. 찻잎 음료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는 찻잎 원료의 농약 잔류물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험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적어도 분기별 또는 로트별로 검사해야 한다.

18. 백화점을 제외한 종합 상품 유통업자는 하기 사항에 대해 적어도 6개월마다 또는 로트별로 검사해야 한다:

(1) 팽이버섯, 건포도 및 정과 제품의 완제품 또는 반제품의 식품 첨가물 용량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험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검사해야 한다.

(2) 즉석 식품, 즉석 조리 식품 및 곧바로 섭취하는 손질된 야채 과일 제품의 완제품 미생물 수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험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검사해야 한다.

19. 농산식품, 버섯류 및 조류의 냉동, 냉장, 탈수, 절임, 젤 및 소(餡)재료 제품, 식물 단백질 및 그 제품, 대두 가공 제품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는 하기 사항에 대해 해당 농산식품 제품의 원료, 반제품 또는 완제품을 적어도 분기별 또는 로트별로 검사해야 한다:

(1) 농산식품, 버섯류 및 조류의 냉동, 냉장, 탈수 제품의 농산식품, 버섯류 및 조류 원료의 진균 독소, 농약 잔류물, 중금속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험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검사해야 한다.

(2) 농산식품, 버섯류 및 조류의 절임, 젤 및 속재료 제품, 식물 단백질 및 그 제품, 대두 가공 제품:

i) 해당 농산식품, 버섯류 및 조류 원료의 진균 독소, 농약 잔류물, 중금속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험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검사해야 한다.

ii) 해당 반제품 또는 완제품의 식품 첨가물 사용 범위, 제한량 및 규격 표준, 관련 위생 표준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험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검사해야 한다.

농산식품, 버섯류 및 조류의 냉동, 냉장, 탈수, 절임, 젤 및 속재료 제품, 식물 단백질 및 그 제품, 대두 가공 제품의 수입업자는 하기 사항에 대해 적어도 분기별 또는 로트별로 검사해야 한다:

(1) 농산식품, 버섯류 및 조류의 냉동, 냉장, 탈수 제품의 진균 독소, 농약 잔류물, 중금속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험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검사해야 한다.

(2) 농산식품, 버섯류 및 조류의 절임, 젤 및 속재료 제품, 식물 단백질 및 그 제품, 대두 가공 제품의 진균 독소, 농약 잔류물, 중금속, 식품 첨가물 사용 범위, 제한량 및 규격 표준, 관련 위생 표준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험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검사해야 한다.

20. 면, 당면류 식품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는 하기 사항에 대해 해당 면, 당면류 제품 원료 또는 완제품을 적어도 분기별 또는 로트별로 검사해야 한다:

- (1) 면, 당면류 제품의 밀가루 원료의 진균 독소, 식품 첨가물 사용 범위, 제한량 및 규격 표준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험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검사해야 한다.
 - (2) 면, 당면류 제품의 밀가루 이외 기타 원료(식품 첨가물, 식용 유지 또는 설탕, 식염, 간장 등 조미료 제외)의 진균 독소, 농약 잔류물, 동물용 의약품 잔류물, 중금속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험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검사해야 한다.
 - (3) 면, 당면류 완제품의 식품 첨가물 사용 범위, 제한량 및 규격 표준, 관련 위생 표준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험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검사해야 한다.
21. 식초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는 하기 사항에 대해 식초 제품의 원료 또는 완제품을 적어도 분기별 또는 로트별로 검사해야 한다:
- (1) 식초 제품의 농산식물, 버섯류 및 조류 원료의 진균 독소, 농약 잔류물, 중금속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험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검사해야 한다.
 - (2) 식초 완제품의 식품 첨가물 사용 범위, 제한량 및 규격 표준, 관련 위생 표준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험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검사해야 한다.
22. 알 제품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는 하기 사항에 대해 알 제품의 원료, 반제품 또는 완제품을 적어도 분기별 또는 로트별로 검사해야 한다:
- (1) 알 제품 원료의 동물용 의약품 잔류물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험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검사해야 한다.
 - (2) 알 제품 반제품 또는 완제품의 식품 첨가물 사용 범위, 제한량 및 규격 표준, 관련 위생 표준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험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검사해야 한다.
23. 밀가루, 전분 이외의 농산식물, 버섯류, 조류 제분 제품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는 하기 사항에 대해 해당 제분 제품의 원료 또는 완제품을 적어도 분기별 또는 로트별로 검사해야 한다:
- (1) 밀가루, 전분 이외의 농산식물, 버섯류, 조류 제분 제품의 농산식물, 버섯류, 조류 원료의 진균 독소, 농약 잔류물, 중금속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험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검사해야 한다.

(2) 밀가루, 전분 이외의 농산식품, 버섯류, 조류 제분 완제품의 관련 위생 표준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험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검사해야 한다.

24. 조미료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는 하기 사항에 대해 조미료의 원료 또는 완제품을 적어도 분기별 또는 로트별로 검사해야 한다:

(1) 간장, 식초 이외의 기타 양조 조미료:

i) 해당 농산식품, 버섯류, 조류 원료의 진균 독소, 농약 잔류물, 중금속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험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검사해야 한다.

ii) 해당 완제품의 식품 첨가물 사용 범위, 제한량 및 규격 표준, 관련 위생 표준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험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검사해야 한다.

(2) 기타 조미료:

i) 해당 농산식품, 버섯류, 조류 원료의 진균 독소, 농약 잔류물, 중금속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험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검사해야 한다.

ii) 해당 유지류 원료의 관련 위생 표준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험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검사해야 한다.

iii) 해당 완제품의 식품 첨가물 사용 범위, 제한량 및 규격 표준, 관련 위생 표준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험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검사해야 한다.

25. 굽고 찌는 식품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는 하기 사항에 대해 굽고 찌는 식품의 원료 또는 완제품을 적어도 분기별 또는 로트별로 검사해야 한다:

(1) 빵, 찌빵:

i) 해당 원료의 진균 독소, 농약 잔류물, 중금속, 표백제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험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검사해야 한다.

ii) 해당 완제품의 관련 위생 표준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험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검사해야 한다.

(2) 기타 굽고 찌는 식품:

i) 해당 원료의 진균 독소, 농약 잔류물, 중금속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험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검사해야 한다.

ii) 해당 완제품의 관련 위생 표준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험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검사해야 한다.

26. 영양 보충 식품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는 하기 사항에 대해 영양 보충 식품의 원료 또는 완제품을 적어도 분기별 또는 로트별로 검사해야 한다:

- (1) 영양 보충 식품 원료의 진균 독소, 농약 잔류물, 중금속, 가소제(캡슐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험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검사해야 한다.
 - (2) 영양 보충 식품 완제품의 중금속, 관련 위생 표준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험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검사해야 한다.
27. 비(非)알코올 음료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는 하기 사항에 대해 비(非)알코올 음료의 원료 또는 완제품을 적어도 분기별 또는 로트별로 검사해야 한다:
- (1) 포장 음료수, 포장 미네랄 워터 및 탄산음료 완제품의 관련 위생 표준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험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검사해야 한다.
 - (2) 기타 음료:
 - i) 해당 농산식물, 버섯류, 조류 원료의 진균 독소, 농약 잔류물, 중금속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험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검사해야 한다.
 - ii) 해당 완제품의 관련 위생 표준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험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검사해야 한다.
28. 초콜릿 및 사탕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는 해당 완제품의 관련 위생 표준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험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적어도 분기별 또는 로트별로 검사해야 한다.
29. 식용 얼음 제품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는 해당 완제품의 관련 위생 표준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험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적어도 분기별 또는 로트별로 검사해야 한다.
30. 식사 및 요리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는 해당 완제품의 관련 위생 표준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험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적어도 분기별 또는 로트별로 검사해야 한다.
31. 도시락 식품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는 하기 사항에 대해 해당 도시락 식품의 원료 또는 완제품을 적어도 분기별 또는 로트별로 검사해야 한다:
- (1) 도시락 식품 원료의 진균 독소, 농약 잔류물, 동물용 의약품 잔류물, 중금속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험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검사해야 한다.
 - (2) 도시락 식품 완제품의 관련 위생 표준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험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검사해야 한다.

32. 기타 식품의 제조, 가공, 조제업자는 해당 원료, 반제품 또는 완제품의 위생 안전 위험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적어도 분기별 또는 로트별로 검사해야 한다.
33. 영유아 식품(영아 및 성장기 영아의 조제식품 제외)의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미생물, 진균 독소, 농약 잔류물, 동물용 의약품 잔류물, 중금속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험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적어도 분기별 또는 로트별로 검사해야 한다.
34. 꿀벌 제품 식품의 수입업자는 해당 꿀벌 제품의 동물용 의약품 잔류물, 농약 잔류물 또는 기타 위생 안전 위험에 따른 위생 관리 항목을 적어도 분기별 또는 로트별로 검사해야 한다.
35. 식품업자가 제품 또는 그 원재료, 반제품 또는 완제품을 자체 검사하거나 기타 검사 기관(기구), 법인 또는 단체에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중앙주관 기관이 정한 검사 방법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검사방법에 따라야 한다.
- 전 항 제품 또는 그 원재료, 반제품 또는 완제품은 대만 내에서 샘플링해야 한다.
36. 식품업자가 본 공고에 의거하여 식품 안전 모니터링 계획을 제정할 경우, 그 내용에 다음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 (1) 제조, 가공, 조제배합업자
 - i) 제품 제조 흐름 및 위해 분석
 - ii) 제조공정 관련 작업 표준 순서
 - iii) 내부 감사와 공급업체 관리
 - iv) 교육 및 훈련
 - (2) 수입업자
 - i) 제품 수입 흐름 및 위해 분석
 - ii) 수입 관련 작업 표준 순서
 - iii) 공급업체 관리
 - iv) 교육 및 훈련

전 항의 식품안전 모니터링 계획은 실제 시행 현황과 부합해야 하며, 만약 계획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기존 버전은 개정일로부터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한다.

37. 식품업자가 본 공고에 의거하여 처리하는 검사 결과 기록은 적어도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